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벤처기업부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증원하고,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(5급 1명)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「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5. 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부 정원 2명(5급 2명)의 직급을 상향조정(4·5급 2명)하고, 중소기업부 기획조정실 및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기획혁신담당관, 재정행정담당관,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,”으로, “기획혁신담당관, 재정행정담당관,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,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획혁신담당관”을 “기획재정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립·종합·조정 및 메시지의 관리”를 “수립·종합·조정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예산의 편성 및 기금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운용계획의 수립·조정
6. 예산 및 기금의 집행·결산에 관한 사항
7.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
8.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
9.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

제4조제5항제5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6호를 제

10호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정행정담당관”을 “혁신행정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·지원

9.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

10.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·조정 및 지원

11.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

12. 정부업무평가(기관평가를 포함한다)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

13. 자체평가계획의 수립·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

14.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확인·점검 및 성과관리

15. 직무성과계약제 운영·평가에 관한 사항

제9조제8항제3호 중 “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·시행”을 “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·시행 및 메시지 관리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대통령, 총리,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

4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

제20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487”를 “488”으로, 일반직 계 “481”을 “482”로,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40”을 “42”로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“171”을 “169”로, 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“143”을 “144”로 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487”를 “488”으로, 일반직 계 “481”을 “482”로,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40”을 “42”로, 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“182”를 “180”로, 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“134”를 “135”로 한다.

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 및 별표9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9]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(제20조 관련)

1. 삭제 <2022. 12. 20.>

2. 삭제 <2023. 2. 28.>

3. 삭제 <2023. 2. 28.>

4. 삭제 <2025. 3. 1.>

5. 제2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5년 12월 31일)

총계	22
----	----

일반직 계	22
-------	----
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전산주사 · 통계주사 · 시설주사 · 방 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5
---	----
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시설 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	7
--	---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③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실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혁신담당관, 재정행정담당관, 규제개혁법무담당관, 정보화담당관, 비상재난담당관</u> 각 1명을 두며, <u>기획혁신담당관, 재정행정담당관, 규제개혁법무담당관</u> 및 <u>정보화담당관</u> 은 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<u>비상재난담당관</u> 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.	④ ----- <u>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</u> ,----- ----- ----- <u>기획재정담당관, 혁신행정담당관</u> 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<u>기획혁신담당관</u> 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<u>기획조정실장</u> 을 보좌한다.	⑤ <u>기획재정담당관</u>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1의2. <u>대통령, 총리,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</u>	<삭 제>
1의3. <u>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</u>	<삭 제>
2. <u>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·종합·조정 및 메시지의 관리</u>	2. ----- <u>수립·종합·조정</u>
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<u>5. 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 · 지원</u>	<u><삭 제></u>
<u>6.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</u>	<u><삭 제></u>
<u>7. 삭제 <2024. 4. 30.></u>	<u><삭 제></u>
<u>8.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 · 조정 및 지원</u>	<u><삭 제></u>
<u>9.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</u>	<u><삭 제></u>
<u>10. 삭제 <2024. 4. 30.></u>	<u><삭 제></u>
<u>11. 삭제 <2024. 4. 30.></u>	<u><삭 제></u>
<u>12. 정부업무평가(기관평가를 포함한다)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</u>	<u><삭 제></u>
<u>13.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· 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</u>	<u><삭 제></u>
<u>14.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· 선정, 추진상황 확인 · 점검 및 성과관리</u>	<u><삭 제></u>
<u>15.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· 평가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<u><신 설></u>	<u>5. 예산의 편성 및 기금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함)</u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16. (생 략)

⑥ 재정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.

1. ~ 3. (생 략)

4. 예산의 편성 및 기금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운용계획의 수립·조정

5. 예산 및 기금의 집행·결산에 관한 사항

6.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

7.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

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운용계획의 수립·조정

6. 예산 및 기금의 집행·결산에 관한 사항

7.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

8.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

9.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

10. (현행 제16호와 같음)

⑥ 혁신행정담당관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8. <u>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</u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<신 설> 10. ~ 13. (생 략) ⑦ ~ ⑨ (생 략) 제9조(중소기업정책실) ① ~ ⑦ (생 략)	<삭 제> 8. <u>업무처리절차의 개선,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·지원</u> 9. <u>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</u> 10. <u>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·조정 및 지원</u> 11. <u>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</u> 12. <u>정부업무평가(기관평가를 포함한다)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</u> 13. <u>자체평가계획의 수립·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</u> 14. <u>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·선정, 추진상황 확인·점검 및 성과관리</u> 15. <u>직무성과계약제 운영·평가에 관한 사항</u> 4. ~ 7. (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) ⑦ ~ ⑨ (현행과 같음) 제9조(중소기업정책실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

⑧ 전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· 2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3.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 · 시행

4. ~ 12. (생 략)

⑨ ~ ㉓ (생 략)

제20조(한시정원) ① ~ ④ 삭제

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며, 별표 9의 정원 1명(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명)은

⑧ -----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대통령, 총리,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

4.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

5. 중소기업 종합대책의 수립 · 시행 및 메시지의 관리

6. ~ 14. (현행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)

⑨ ~ ㉓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한시정원)

<삭 제>

<u>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.</u> 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--	-------------------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3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487</u>		<u>488</u>	+1	
일반직 계	.		.		.		
	.		.		.		
	.		<u>481</u>		<u>482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			<u>40</u>		<u>42</u>	+2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 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		<u>171</u>		<u>169</u>	-2	
.			.		.		
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 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· ·	 <u>143</u> · ·	 <u>144</u> · ·	 +1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4]

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(제15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계	.		.		.		
			<u>487</u>		<u>488</u>	+1	
일반직	.	계	.		.		
	.		.		.		
	.		<u>481</u>		<u>482</u>	+1	
	.		.		.		
	.		.		.		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			<u>40</u>		<u>42</u>	+2	
행정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공업 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 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		<u>182</u>		<u>180</u>	-2	
.			.		.		
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 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· ·	 <u>134</u> · ·	 <u>135</u> · ·	 +1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